

부속서 II

주 해

1.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 9.8 조(비합치 조치) 및 제 10.6 조(비합치 조치)에 따라, 그 당사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,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.
 - 가. 제 9.3 조(내국민대우) 또는 제 10.2 조(내국민대우)
 - 나. 제 9.4 조(최혜국대우) 또는 제 10.3 조(최혜국대우)
 - 다. 제 9.6 조(고위경영진 및 이사회)
 - 라. 제 9.7 조(이행요건)
 - 마. 제 10.4 조(시장접근), 또는
 - 바. 제 10.5 조(현지주재)
2.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.
 - 가. **분야**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.
 - 나. **하위분야**는 유보된 특정한 분야를 지칭한다.
 - 다. **관련의무**는 제 9.8 조제 2 항 및 제 10.6 조제 2 항에 따라 유보된 분야·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 1 항에서 언급된 조항(들)을 명시한다.
 - 라. **유보내용**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·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. 그리고
 - 마. **기준의 조치**는, 투명성의 목적상,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·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준의 조치를 적시한다.
3. 제 9.8 조제 2 항 및 제 10.6 조제 2 항에 따라, 유보항목의 **관련의무**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**유보내용** 요소에 적시된 분야·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.
4. 더 명확히 하기 위해, 현지주재(제 10.5 조)와 내국민대우(제 10.2 조)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(제 10.5 조)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대우(제 10.2 조)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.

5. 제 9.1 조(적용범위) 또는 제 10.1 조(적용범위)에도 불구하고, 국경 간 도박 및 베팅 서비스¹⁾무역은 제 10 장(국경 간 서비스무역)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, 도박 및 베팅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제 9 장(투자)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
더 명확히 하기 위해,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베팅 및 도박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.

6. 다음에 관한 조치는 제 9.7 조(이행요건)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.

- 가. 제품과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의무
- 나. 재활용 이행계획과 그 결과의 제출
- 다. 적용되는 재활용 부과금의 납부
- 라. 일정 비율의 저공해 자동차 배급 의무, 그리고
- 마. 저공해 자동차를 배급할 계획의 제출 및 승인

1) 더 명확히 하기 위해, “도박 및 베팅 서비스”는 전자적 전송을 통하여 공급되는 그러한 서비스와 사행성게임물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.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정의된 대로, “사행성게임물”은 특히 베팅을 통하여 우연에 의하여 금전적 손실 또는 이득을 초래하는 게임기기를 포함한다.